

창업보육센터운영세칙

제정 1998. 5. 29
개정 2001. 6. 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입주자에게 효율적 지원과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삭제)

제3조(삭제)

제4조(삭제)

제5조(삭제)

제2장 입 주 관 리

제6조(입주자 임무) ① 입주자는 본 대학 시설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화재, 도난 등 시설물 관리에 입주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입주신청/계약 등) ①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센터에 입주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의 입주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거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2의 입주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설, 장비, 전화사용료, 기술지도비, 세미나 및 행정분담금을 별지3의 기준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각종 사용료는 월단위로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상호협의를 의해 주 식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.

제8조(삭제)

제9조(삭제)

제10조(삭제)

제11조(삭제)

제3장 입주자모집

제12조(삭제)

제13조(모집 및 심사) ① 규정 제7조의 2에 의거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본 대학 신문, 본 대학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.

② 입주 대상자 심사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본 대학 창업규정에 의거 승인된 창업기업은 별도의 심사 없이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.

제14조(삭제)

제14조의 2(입주기간 연장) ① 규정 제9조에 의거 입주기간 연장을 센터장과 입주자의 협의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한다.

②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계약기간 만료의 30일전까지 서면으로 별지4의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센터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.

제14조의 3(운영위원회 구성) ① 규정 제5조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9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전문성 및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4조의 4(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센터담당이 된다.

제15조(준용) 이 세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별지 #2

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 주 계 약 서

제1조(목적) 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 _____ 대표이사 _____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간에 창업보육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“을”은 동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.

② “을”은 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과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기타 분쟁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계약취지에 맞게,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해결하며,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.

제3조(입주면적) 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_____ 평으로 한다

제4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총 2년을 원칙으로 하며 “갑”과 “을”의 사정에 의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② 계약기간도 6월 단위로 갱신한다. 단, 실험실 창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“을”의 계약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.

제5조(사용료) “을”은 “갑”의 제반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별첨 사용료 납부기준표에 의거 월 _____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책임/손해배상) ① “을” 및 그 참여 인력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 “갑”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② “을” 및 그 참여 인력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주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손해는 “을”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(내용변경)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기계약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동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
“갑”
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
센터장 이 전 영 (인)

“을”
주식회사 _____
대표이사 _____ (인)

사용료 납부 기준표

(변경전)

계약기간	시설사용료(A) (평당기준)	유틸리티(B)	행정분담금	계
1~6개월	시중임대료의 50%	사용분 (전화, 전기, 냉·난방) 등	(A)+(B)의 10%	
7~12개월	시중임대료의 80%			
13~18개월	시중임대료의 120%			
19~24개월	시중임대료의 150%			

* 시중임대료 기준은 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(변경후)

계약기간	시설사용료(A) (평당기준)	유틸리티(B) 사용료	기술지도비, 특별강의료 등(C)	행정분담금(D)
1~6개월	평당 15,000원/월	평당11,000원/월	100,000원/월	{(A+B+C)×10%}
7~12개월	15,000원×130%	"	"	"
13~18개월	15,000원×160%	"	"	"
19~24개월	15,000원×190%	"	"	"
25개월이상	15,000원×220%	"	"	"
실험실창업	면제	면제	100,000원/월	C × 10%

* 전화사용료는 실비로 계산

별지 #4

입주기간 연장 신청서

업 체 명		대 표 자	
입 주 기 간	~ (2년)		
연장신청기간	~ (월)		
입주기간 연장사유 (구체적으로 기술)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 사유로 입주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신청인(대표)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포항공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귀하</p>			